



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

제3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(제1차 교육위원회)
2017. 7. 5. (수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안

교 육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김덕환

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 종 욱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17년 6월 26일

○ 회부일자 : 2017년 6월 28일

3. 제정이유

충청북도 내 초등학생의 수상위기상황에서의 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수상위기상황 시 자기구조법 등 생존수영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생존수영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 마련과 시행을 교육감의 책무로 함
(안 제3조)

나. 생존수영교육 계획 수립(안 제4조)

다. 생존수영교육 활성화(안 제5조)

라. 생존수영교육 시설 확보(안 제6조)

마. 생존수영교육 전문성 확보(안 제7조)

바. 생존수영교육 시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사. 예산지원(안 제9조)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조례안 초등학생의 수상위기사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수상 위기사황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 할 수 있는 대처 능력을 기르는 자기구조법 및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기본구조법 등 수영 기능을 익히는 생존수영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,
- 주요내용으로 초등학교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 마련과 시행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, 생존수영교육 목표 및 추진 방향·교육내용 및 방법·교육 시설 확보·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 생존수영교육 진흥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명시한 것은 생존수영교육이 학교교육과정 속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사료되며
-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수영장과 간이수영시설 등 생존수영교육시설 확보와 생존수영교육 지도자의 전문성과 지도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은 생존수영교육활동의 실질적 운영과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- 세월호 참사 이후 수상안전사고 대처능력에 대한 인식강화와 함께 실질적인 수영실기교육과 수상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수영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.
- 이에 따라 교육부도 수영실기교육을 2018년까지 초등 3~6학년 학생으로 확대 운영하고 수영실기교육 확대에 따른 수영장 확보 및 연차적 건립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, 2016년 7월 초등 수영교육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선도교사 양성연수를 추진하고 있음

- 이러한 측면에 비추어 볼 때, 초등학생들의 수상안전의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수상위기대처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생존수영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기여할 본 조례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.

- 다만, 이 조례 제정을 통하여 학교현장에서 생존수영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수영장 등 교육시설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바, 무엇보다도 지역별 수영시설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도교육청 간 실질적인 행·재정적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두 기관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하다 사료됨